

## NCS 기반 채용 직무기술서

### 【청사운영직-차량운전】

채용분야	차량 운전	NCS 분류체계	대분류	중분류	소분류	세분류(직무)
			09.운전운송	01.자동차운전·운송	01.자동차운전·운송	기관장 차량 운전·관리(자체 개발)
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주요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과정 연구·개발</li> <li>○ 교과용 도서 편찬 및 검·인정 업무</li> <li>○ 교수·학습 관련 연구 개발</li> <li>○ 교육평가 연구개발과 장기발전 방안 연구</li> <li>○ 각종 국가고사 출제·관리</li> </ul>					
채용분야 주요업무	○ (차량운전) 기관장 차량 운전·관리, 및 차량 운행 정보 관리 등 임원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					
NCS 직무능력 내용	○ 01.운행계획수립, 02.운행 전후 차량 점검, 04.차량운행, 05.비상상황대처, 06.운행결과보고, 07.운행결과평가, 08. 운행개선관리					
전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류전형: 선발분야 관련 경력, 경험, 자격 등 직무능력 기반의 입사지원서 및 직업기초능력 기반의 자기소개서 작성</li> <li>○ 면접전형: NCS기반 직무수행능력, 직업기초능력 등 역량면접</li> </ul> <p>* 자세한 지원자격 및 전형 내용은 채용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		
일반요건	연령	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				
	성별	제한없음				
교육요건	학력	제한없음				
	전공	제한없음				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운행 전후 차량 점검) 차량점검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, 내부기기 사용법, 타이어 유지 관리 방법, 차량 외부 유지 관리 방법</li> <li>○ (차량운행) 도로교통법, 안전운전 방법 및 요령, 운행장비 시스템 작동 방법, 차량 내부기기 사용법, 속도고려 운행시간 계산법, 운행노선 지리·교통정보, 차량 내·외부 점검 체크리스트, 타이어 유지 관리 방법, 응급조치 방법, 신고기관 및 절차, 비상상황 행동지침</li> <li>○ (행정) 차량 운영 계획 및 업무일지·운행일지 작성 및 정리가 가능 능력</li> </ul>					
필요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운행 전후 차량 점검) 차량 일상 점검 기술, 차량 내부 기기 점검 기술, 차량 외부상태 점검 기술, 차량 점검 기술, 타이어 점검 기술</li> <li>○ (차량운행) 운행정보기기 작동 기술, 차량 내부기기 및 외부상태 점검기술, 차량·타이어 점검 기술, 관련 법규 실천 능력, 방어운전, 안전운전, 운행장비 시스템 확인기술, 장비 시스템 작동</li> </ul>					

	<p>기술, 커뮤니케이션, 신고 방법, 심폐소생술, 비상시 대처기술</p> <p>○ (행정) 한글, 엑셀 등을 사용 할 수 있는 OA 능력</p>
필요태도	<p>○ (운행 전후 차량 점검) 매뉴얼에 기반한 정확한 기기 점검 태도, 승객 편의를 고려한 점검 태도, 성실한 점검 태도, 청결 유지 태도, 안전한 운행을 위한 준비성, 환경친화적 운전 태도</p> <p>○ (차량운행) 매뉴얼에 기반한 정확하고 성실한 점검태도, 안전한 운행을 위한 준비성 및 주의력, 승차자 상태파악을 위한 세심한 태도 및 배려심, 교통흐름에 따른 유연한 대처, 준법정신, 보행자 보호 및 양보운전의 태도, 비상상황에서의 침착성</p> <p>○ (행정) 자료 작성의 성실성 및 정확성</p>
관련자격 (우대사항)	<p>○ 면접일 현재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로 2년 이상 운전업무 경력자</p> <p>- 경력증명서(공고일 이후 발급분) 상 '운전'이 담당업무로 기재된 근무경력에 한하여 인정</p> <p>○ 임용일(23.1.1.) 기준 최근 10년(13.1.1부터) 이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취소, 정지 처분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</p> <p>○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(전형별 가산점 부여)</p> <p>※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 부여 대상은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3항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을 미부여함. 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 상한선 30%를 적용하지 않음.</p> <p>○(준)고령자(만50세) 이상(전형별 가산점 부여)</p>
직업 기초능력	<p>○ 의사소통능력, 정보능력, 문제해결능력, 대인관계능력, 기술능력, 직업윤리능력</p>
참고사이트	<p>○ <a href="http://www.ncs.go.kr">www.ncs.go.kr</a></p>